

檢 討 報 告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日 時 : 2009. 10 . 20 (화) 10:00

行政建設委員會

專門委員 명 금 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동 조례안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하여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각 종 지원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구 기업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임.

< 개 요 >

동 조례안은 전문 제4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3장에서는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

- (1) 안 제5조에서는 창업자에게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
- (2)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제품 발굴 및 홍보 사업, 국내외 판로개척, 해외시장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특화산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
- (3)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전한 기업의 관련단체의 창립 권장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재정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우수기업 발굴·시상 등을 규정
- (4)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검토의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여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 해외교류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재정 지원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의 모색은 물론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이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혁신적인 도시환경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미래지향적으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구에서도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고 올바른 정책방향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차목, 타목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서 적절하게 작성된 조례안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13조의 예산지원사항에 있어서는 각 항목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